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장덕준 의원)

의안 번호	19-170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19. 11. .

발 의 자: 장덕준, 강명숙, 권영숙,
김기석, 김영미, 정혜경

1. 개정이유

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에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적용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라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을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안 제6조)

3. 관계법령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4. 입법예고 : 2019. 11. 21~11. 25.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

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보상금액 결정기준) 보상금 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과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감 정가액으로 지급한다. 다만, 감 정이 불가할 때에는 「지방세 법」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 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보상금액 결정기준) ----- ----- ----- -- 「<u>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</p>